

이천시 문화상 조례

소관부서 : 문화예술과

제정 1996· 3· 1 조례 제 23호
일부개정 2013· 8· 7 조례 제 991호
일부개정 2019· 1· 1 조례 제1464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9· 7· 1 조례 제1506호
일부개정 2020· 12· 29 조례 제1661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21· 6· 25 조례 제172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이천시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· 8· 7>

제2조(수상부문과 인원) ① 이천시문화상(이하 “문화상”이라 한다)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· 8· 7, 2021· 6· 25>

1. 문화부문 1명
2. 예술부문 1명
3. 삭제 <2021· 6· 25>
4. 삭제 <2021· 6· 25>
5. 체육부문 1명
6. 삭제 <2021· 6· 25>

②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· 8· 7>

제3조(시상시기) 문화상 시상은 년 1회로 하며 시기는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·면·동장이 한다. 다만, 시장이 향토문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3· 8· 7>

제5조(수상대상자의 조건) ① 수상대상자는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발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공이 큰 사람으로 3년 이상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,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·8·7, 2019·7·1>

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. <개정 2013·8·7>

[제목개정 2019·7·1]

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문화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·8·7>

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,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의 구성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신설 2013·8·7, 단서신설 2021·6·25>

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 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 <신설 2013·8·7>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9·7·1>

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위촉해제 한다. <신설 2013·8·7, 개정 2019·7·1>

⑥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문화상 심사위원 대상으로 위촉할 수 없다. <신설 2013·8·7, 개정 2019·7·1>

⑦ 삭제 <2021·6·25>

제6조의2(회의)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·6·25>

[본조신설 2013·8·7]

제6조의3(간사 및 서기)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비

치하기 위하여 감사 및 서기를 둔다.

② 감사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. <개정 2019·1·1, 2020·12·29, 2021·6·25>

[본조신설 2013·8·7]

제6조의4(자료제출 요구 등)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·8·7]

제7조(수상자 선정) 부문별 수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 제6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. <개정 2013·8·7, 2019·7·1>

제8조(시상)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. <개정 2013·8·7>

제9조(실비변상)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·8·7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·8·7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·8·7 조례 제9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1·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③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」 제6조의3제2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19·7·1 조례 제1506호>

이천시 문화상 조례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0·12·29 조례 제1661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」 제6조의3제2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 〈2021·6·25 조례 제172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